



NCS교육운영지원센터 운영규칙

규정번호	4-0-9		
제정일자	2014.04.17		
개정일자			
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	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NCS교육운영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NCS 기반 교육과정의 개발, 운영,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
2. 학습모듈 및 수행 준거에 근거한 NCS 기반 교과목의 교재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제작 지원 업무
3.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산업체 직무전문가 협의회 구성 지원 업무
4. NCS 기반을 활용한 융·복합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업무
5.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수요자 및 산업체 중심의 직무완성도 평가와 관련된 제도 개발 업무
6. NCS 기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·학습방법 계획 및 운영 지원 업무
7. NCS 기반 교육과정개발 교육·연수 및 컨설팅 지원
8. 기타 NCS 기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두며,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NCS교육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NCS교육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센터장이 하며,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-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
 2.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3. 기타 센터장 및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회의록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.

- 제5조(자문위원)** ①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자문위원은 교내외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·위촉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③ 교외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